



World
Shooting
Para Sport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장애인사격종목기술규정

2026년 1월 1일 본

목차

서문	6
전문	6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	6
본 규칙 및 규정의 변경	6
정의	6
1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정	10
1.1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	10
1.2 해석	10
1.3 관리·운영	11
1.4 본 규칙 및 규정의 인쇄 및 발행	11
1.5 본 규칙 및 규정의 개정	11
2. 경기 규정	12
2.1 경기	12
2.3 대회 관리	13
2.4 대회조직위원회(“LOC”)	14
2.5 선수자격	14
2.6 출전 기준	15
2.7 성별	15
2.8 도핑방지	15
2.9 국제등급분류	16
2.10 대표자회의	16
2.11 스타트넘버	17
2.12 기술 항의 및 항소	17
2.13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18
2.14 실격	18
2.15 징계 조치	19
2.16 경기 중 코칭	19
2.17 경기 결과	19
2.18 순위	19
2.19 기록	22
WSPS 규칙	25

3 복장 및 장비 규칙	25
3.1 국제사격연맹(ISSF) 복장 규정 준수	25
3.2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고유 복장 규정(재킷, 바지 및 신발)	25
3.3 장비	27
3.4 장비검사	28
3.5 스트랩	28
3.6 방아쇠 연장 장치 및 방아쇠 개조	29
3.7 사격의자	29
3.8 사격 테이블	34
3.9 SH2 소총 지지대	36
4 소총 규칙	39
4.1 경기 종목 및 시간	39
4.2 사격 자세	41
4.3 로더(SH2에 한함)	44
5. 권총 규칙	46
5.1 경기 종목 및 시간	46
5.2 사격 자세	47
5.3 장전 장치(안전기)	47
6 산탄총 규칙	48
6.1 경기 종목 및 시간	48
6.2 사격 자세	48
6.3 장전 장치(안전)	49
6.4 기타	50
7 시각장애(VI) 규정	51
7.1 경기 종목 및 시간	51
7.2 복장 및 장비	51
7.3 사격 자세	53
7.4 시각선수보조	53
8 단체전 규칙	55

8.1 소총/권총 단체전 경기 형식	55
8.2 혼성팀 - 소총/권총	55
8.3 파라 트랩 2인 단체전	55
9 의료 규정	56
9.1 선수 안전	56
9.2 간질	56
9.3 심박조율기(페이스메이커)	56
부록 1 대회 요건 및 지정	
부록 2 인정대회 요건	
부록 3 제재대회 및 승인대회 요건	
부록 4 방아쇠 연장 장치 및 개조	
부록 5 SH2 지지대 및 스프링	
부록 6 P5 10m 스탠다드 공기권총 혼성 SH1	

서문

전문

본 세계장애인사격연맹(World Shooting Para Sport, WSPS) 규칙 및 규정은 모든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에 의 목적으로 적용된다. 모든 세계 장애인 스포츠 (World Para Sports, 세계장애인사격연맹 포함)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은 IPC 핸드북에 명시된 세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본 문서의 제1장 및 제2장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 및 규정으로 구성된다. 제3장부터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으로 구성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은 본 규칙 및 규정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paralympic.org/shooting/rules-and-regulations/classification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용어는, 본 규칙 및 규정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해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본 규칙 및 규정의 변경

본 규칙 및 규정은 ISSF 규칙의 변경, 등급분류 관련 사안 또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정의

선수(Athlete):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등급분류(Classification):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등급분류 패널(Classification Panel):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등급분류사(Classifier):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대회(Competition): 하나의 관할 기구 하에 함께 운영되는 개인전 및 혼성 단체전으로 구성된 일련의 경기.

대회 주리(Competition Jury):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대회의 판정을 담당하도록 임명된 자(들).

적격 장애(Eligible Impairment):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장비 검사(Equipment Control): 선수의 장비가 본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경기(Event): 대회에서 진행되는 단일 경기. 예: R4 경기.

결선(Finals): 예선 라운드가 종료된 이후 진행되는 최종 라운드 경기.

사선(Firing Line): 표적까지의 적정 거리를 표시하는 출발선. 모든 선수는 경기 중 반드시 이 선의 뒤에 위치해야 한다.

신분증(ID Card): 여권과 같이 선수를 식별할 수 있는 공식 사진 신분증.

국제등급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등급분류.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지정한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수행된다.

국제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IPC가 패럴림픽 경기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장애인 스포츠 종목의 전 세계 유일한 대표 단체로 인정한 국제 스포츠 연맹.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IOSD): IPC가 특정 적격 장애 그룹을 대표하는 전 세계 유일한 단체로 인정한 독립적인 장애인 스포츠 국제기구.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핸드북(IPC Handbook): IPC 웹사이트에 게시된 IPC 핸드북.

국제사격연맹(ISSF): 국제사격연맹.

ISSF 규칙(ISSF Rules): 국제사격연맹에서 시행 중인 규칙을 말한다. 해당 규칙은 수시로 개정된다. ISSF 규칙에는 ISSF 일반 규칙(ISSF General Regulations), 일반 기술 규칙(ISSF General Technical Rules), 소총 규칙(ISSF Rifle Rules), 권총 규칙(ISSF Pistol Rules) 및 산탄총 규칙(ISSF Shotgun Rules)이 포함된다.

로더(Loader): 대회 중 선수의 장전을 보조하는 대회 관계자.

조직위원회(LOC, Local Organising Committee):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를 조직·운영하기 위해 임명된 조직.

기능고장(Malfunctions): ISSF 규칙에 정의된 허용 및 비허용 기능고장을 모두 포함한다.

최소 자격 점수(Minimum Qualifying Score, "MQS"): 종목 및 스포츠 등급별 자격 점수 목록이다. 선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해당 점수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특정 대회에 적용되는 MQS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정한다.

혼성팀(Mixed): 남자 선수 1명과 여자 선수 1명으로 구성된 팀 경기.

국가연맹(National Federation): 국제연맹에 소속된 각 국가의 회원 단체.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 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의 국가 회원 단체를 말한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장애가 있는 선수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각 국가패럴림픽위원회는 IPC의 국가 회원이다.

혼성(Open): 남녀 선수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경기.

장애인 스포츠(Para sport): IPC 등급분류 코드에 따라 운영되는 스포츠이다. IPC가 장애인 스포츠로 인정한 종목을 말한다.

패럴림픽 대회(Paralympic Games): IPC가 소유하고 승인하는 주요 국제대회이다. 하계 및 동계 대회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번갈아 개최된다. 패럴림픽 경기 프로그램에 포함된 장애인 스포츠 종목에서 선수들이 경쟁한다.

패럴림픽 경기 프로그램(Paralympic Games Sport Programme): 패럴림픽 대회의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된 장애인 스포츠 종목.

지체장애(Physical Impairment, "PI"):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경기 일정(Programme of Events): 대회에서 진행되는 경기의 목록이다. 각 경기일과 진행 순서를 포함한다.

사선통제관(Range Official): 대회에서 본 규칙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명된 심판이다. 조직위원회가 임명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사격(Shooting Para sport):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관할하는 장애인 스포츠 종목이다. IPC가 장애인 스포츠로 인정한 종목이다.

스포츠등급(Sport Class):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스포츠등급현황(Sport Class Status):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팀 리더(Team Leader): 해당 대표단의 주요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공인 팀 임원.

팀 임원(Team Official): 선수가 아닌 공인 팀 구성원이다. 해당 대표단을 대표한다.

기술대표(Technical Delegate):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임명한 대회 주리 구성원이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를 감독·관리한다.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모든 기술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총괄한다.

대표자회의(Technical Meeting):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 전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기술적 사항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물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각선수보조(VI Assistant):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지정된 팀 임원이다. 대회 중 시각장애 선수를 지원한다.

시각장애(Vision Impairment, “VI”):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WADA: 세계도핑방지기구.

WADC: 세계도핑방지규약.

세계장애인사격연맹(WSPS, World Shooting Para Sport): World Shooting Para Sport.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승인대회(WSPS Approved Competitions): 장애인사격 종목의 국제 및 국내 수준 대회이다. 세계 장애인사격연맹의 승인을 받은 대회를 말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권대회(WSPS Championships): 장애인사격 세계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지역 선수권대회를 말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WSPS Licence):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발급하는 라이선스 카드이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 등록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발급된다. 선수는 해당 라이선스를 통해 패럴림픽 대회,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권 대회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임직원(WSPS Official):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인증한 임직원.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 등록 및 라이선스 규정(WSPS Athlete Registration and Licensing Regulations):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웹사이트에 게시된 규정이다. 수시로 개정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국적 정책(WSPS Nationality Policy):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웹사이트에 게시된 국적 정책이다. 수시로 개정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WSPS Recognised Competitions): 패럴림픽 대회,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권대회,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승인대회를 말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WSPS Sanctioned Competitions): 장애인사격 월드컵 대회 및 기타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지정한 장애인사격 국제대회를 말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정

1. 일반 규정

1.1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

- 1.1.1 본 규칙 및 규정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정(“규정”)과 상단에 기재된 부속서를 포함한다. 해당 부속서는 본 규칙 및 규정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이룬다. 이를 통칭하여 “규칙 및 규정”이라 한다.
- 1.1.2 본 규칙 및 규정의 준수는 모든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 대해 의무 사항이다.
- 1.1.3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을 적용한다. 본 규칙 및 규정과 ISSF 규칙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규칙 및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ISSF 규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ISSF 규칙이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의 어떠한 측면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충돌이나 ISSF 규칙의 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그 해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에 있으며, 이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의 단독 재량에 따른다.
- 1.1.4 모든 참가자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본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여기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지원 인력, 코치, 트레이너, 감독, 통역, 팀 임원, 의료 또는 구급 인력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1.5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은 본 규칙 및 규정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 1.1.6 IPC 핸드북은 장애인사격 종목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기준 문서이다.
- 1.1.7 본 규칙 및 규정에서 다루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단독 재량으로 결정한다.
- 1.1.8 본 규칙 및 규정의 현행 판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판은 이전에 발효되었던 모든 규칙 및 규정의 판을 대체한다.

1.2 해석

- 1.2.1 본 규칙 및 규정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모든 용어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 1.2.2 본 규칙 및 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주석 또는 설명은 본 규칙 및 규정의 해석을 위해 사용된다.
- 1.2.3 본 규칙 및 규정에 사용된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해당 규정 또는 규칙과 별도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1.2.4 본 규칙 및 규정에서 사용된 남성형 명사는 여성형 명사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3 관리 · 운영

1.3.1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장애인사격 종목의 국제연맹으로서 해당 종목을 관할한다. IPC는 “세계 장애인사격(World Shooting Para Sport, ‘WSPS’)” 명칭 하에 모든 책임을 수행한다. 본 규칙 및 규정에서 사용되는 “World Shooting Para Sport(‘WSPS’)”라는 용어와 “IPC”라는 용어는 상호 대체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1.4 본 규칙 및 규정의 인쇄 및 발행

1.4.1 본 규칙 및 규정은 IPC의 저작물이며,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 선수, 팀 임원 및 WSPS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지위를 갖는 모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발행되었다. 본 규칙 및 규정은 IPC의 지속적인 저작권 행사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WSPS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필요성이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가 인쇄하거나 번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을 IPC에 양도할 권리도 포함된다. 그 외의 모든 단체는 본 규칙 및 규정을 재인쇄, 번역 또는 발행하기 전에 IP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본 규칙 및 규정의 해석은 영어판의 해석을 우선한다.

1.5 본 규칙 및 규정의 개정

1.5.1 본 규칙 및 규정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여기에는 등급분류 관련 사안의 변경,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의 변경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경기 규정

2.1 경기

2.1.1 장애인사격 종목의 목적상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인정하는 경기는 다음과 같다.

경기	종목	성별	스포츠등급
R1	R1 공기소총 입사 남자 SH1	남자	SH1
R2	R2 공기소총 입사 여자 SH1	여자	SH1
R3	R3 공기소총 복사 혼성 SH1	혼성	SH1
R4	R4 공기소총 입사 혼성 SH2	혼성	SH2
R5	R5 공기소총 복사 혼성 SH2	혼성	SH2
R6	R6 50m소총 복사 혼성 SH1	혼성	SH1
R7	R7 50m소총 3자세 남자 SH1	남자	SH1
R8	R8 50m소총 3자세 여자 SH1	여자	SH1
R9	R9 50m소총 복사 혼성 SH2	혼성	SH2
P1	P1 공기권총 남자 SH1	남자	SH1
P2	P2 공기권총 여자 SH1	여자	SH1
P3	P3 25m권총 혼성 SH1	혼성	SH1
P4	P4 50m권총 혼성 SH1	혼성	SH1
*P5	P5 스탠다드공기권총 혼성 SH1	혼성	SH1
*PT1	PT1 트랩 좌식 혼성 SG-S	혼성	SG-S
*PT2	PT2 트랩 하지 혼성 SG-L	혼성	SG-L
*PT3	PT3 트랩 상지 혼성 SG-U	혼성	SG-U
*VIS	VIS 공기소총 입사 시각 SH-VI	혼성	SH-VI
*VIP	VIP 공기소총 복사 시각 SH-VI	혼성	SH-VI
*R10	R10 공기소총 복사 혼성팀 SH1	혼성팀	SH1
*R11	R11 공기소총 복사 혼성팀 SH2	혼성팀	SH2
*P6	P6 공기권총 혼성팀 SH1	혼성팀	SH1

*패럴림픽종목 아님

2.2 대회 등급

2.2.1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각 대회의 규모, 크기 및 성격을 기준으로 대회를 분류한다. 이를 통해 각 대회에 적용되는 요건을 결정한다.

2.2.2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IPC 대회	· 패럴림픽 대회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권대회	·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세계선수권대회 ·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지역 선수권대회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	·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월드컵 대회 ·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지정한 기타 장애인사격 국제대회(청소년대회, IOSD 대회, 아시안게임, 패러아메리칸게임 등 포함)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승인대회	· 장애인사격 종목의 국제대회(일명 “그랑프리”) ·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승인한 국가연맹 주관 대회 ·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승인한 기타 장애인사격 종목 대회

2.2.3 각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 등급별 적용 요건에 대한 개요는 「대회 요건 및 지정(부록 1)」을 참조한다.

2.3 대회 관리

2.3.1 IPC는 패럴림픽 대회를 관리한다.

2.3.2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를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모든 사항에 대해 최종 관할권을 가진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해당 관할권을 대회 주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회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대회 운영 규칙에 부합하는 지침을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승인대회를 감독할 권한 또한 가진다.

2.3.3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조직위원회(LOC)에 대회의 특정 측면 또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 및 규정과 관련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2.3.4 “World”, “Regional” 및 “World Shooting Para Sport”라는 용어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장애인사격 대회 또는 경기와도 함께 사용될 수 없다. 또한 “Paralympics”, “Paralympic”, “Para”라는 용어, 또는 IPC 활동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타 모든 명칭, 그리고 패럴림픽 깃발, 패럴림픽 심벌(세 개의 아지토스 디자인) 및 기타 모든 상표, 로고 등은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맥락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로 표시될 수 없다.
- 2.3.5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의 대회 관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한다.
- 2.3.6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승인대회의 대회 관리 요건과 관련된 개최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한다.

2.4 대회조직위원회(“LOC”)

- 2.4.1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조직 및 개최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 2.4.2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패럴림픽 대회 제외)의 경우, 조직위원회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조직 구조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의 승인 대상이 된다.
- 2.4.3 조직위원회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과 협력하여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여기에는 경기 일정의 준비, 선수 등급분류의 준비, 모든 기술 장비의 설치 및 대회 전·중 장비 설치가 포함된다.

2.5 선수자격

- 2.5.1 **자격 요건 - 패럴림픽 대회**
IPC는 패럴림픽 대회의 선수 자격 요건을 결정한다.
- 2.5.2 **자격 요건 -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수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2.5.2.1 IPC 웹사이트에 게시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국적 정책의 요건을 충족할 것(<https://www.paralympic.org/ipc-handbook>);
 - 2.5.2.2 최종 참가신청 마감 시점까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 등록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를 보유할 것;
 - 2.5.2.3 유효한 신분증(ID Card)과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를 보유할 것(대회 기간 중 상시 소지해야 함).

- 2.5.2.4 해당 선수는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에 의해 참가신청되어야 하며(NPC가 그 책임을 국가연맹에 위임한 경우에는 국가연맹에 의해 참가신청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해당 NPC는 IPC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2.5.2.5 대회요강 및/또는 참가자격기준에 정의된 관련 대회 참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5.2.6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국제등급분류를 완료하고, '부적격(NE)'이 아닌 스포츠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는 '신규 선수(New Athletes)'의 경우,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적격 장애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 2.5.2.7 실격, 정지 또는 기타 제재를 받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2.5.3 자격 요건 -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승인대회**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승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는 해당 조직위원회(LOC) 또는 관할 기구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6 출전 기준

- 2.6.1 상기 자격 요건 외에도,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는 해당 대회에 적용되는 출전 기준, 예선 기준 및 모든 종목별 출전 규칙을 충족해야 한다.

2.7 성별

- 2.7.1 아래 규정 2.7.3의 적용을 전제로, 선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자 경기 출전 자격을 갖는다.
 - 2.7.1.1 법적으로 남성으로 인정될 것; 그리고
 - 2.7.1.2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출전 자격을 갖출 것.
- 2.7.2 아래 규정 2.7.3의 적용을 전제로, 선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자 경기 출전 자격을 갖는다.
 - 2.7.2.1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될 것; 그리고
 - 2.7.2.2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출전 자격을 갖출 것.
- 2.7.3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수시 개정됨) 및 적용 가능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정에 따라, 트랜스젠더 선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2.7.4 법적으로 제3의 성으로 인정된 사람의 출전 자격은 적용 가능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정에 따라,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사안별로 결정한다.

2.8 도핑방지

- 2.8.1 IPC 웹사이트에 게시된 IPC 도핑방지규약은 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되며, 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장애인사격 종목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 참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관여의 조건으로서 IPC 도핑방지규약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 2.8.2 모든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서 실시되는 도핑 관리 절차는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검사 권한 및 결과 관리 권한을 포함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모든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승인대회에서도 도핑 관리가 실시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9 국제등급분류

- 2.9.1 국제등급분류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와 연계하여 실시될 수 있다. 등급분류는 반드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2.9.2 대회 전에, 등급분류 대상 선수의 명단과 등급분류 일정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작성한다. 선수 및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통보받는다.
- 2.9.3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스포츠등급현황이 '신규(New)', '검토(Review)' 또는 '고정 검토일이 있는 검토(Review with a Fixed Review Date)'인 모든 선수는, 해당 대회에서 선수 평가 세션이 제공되는 경우,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선수 평가 세션에 참석해야 한다.
- 2.9.4 규정 2.5 및 상기 2.9.3의 조건을 전제로 하고, 대회 출전 요건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서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 2.9.4.1 스포츠등급현황이 '신규(New)'인 선수는 출전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없다. 다만, 이후 해당 선수가 '신규(New)'로 출전했던 동일한 스포츠등급을 부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단독 재량으로 MQS 목적에 한해 해당 선수의 결과를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 2.9.4.2 스포츠등급현황이 '검토(Review)' 또는 '고정 검토일이 있는 검토(Review with a Fixed Review Date)'인 선수는 대회력 연도 중 출전할 수 있으며,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 대회에서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2.10 대표자회의

2.10.1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각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 개시 전에 조직위원회(LOC)는 기술대표와 함께 참가 국가 대표단 및 조직위원회가 참석하는 대표자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해당 회의는 기술대표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2.10.1.1 기술대표는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대회에서의 모든 기술적 사항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2.10.1.2 가능한 경우, 기술대표는 대표자회의에서 대회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또는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2.11 스타트넘버

2.11.1 각 선수에게 스타트넘버가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번호는 모든 대회 명단 및 일정표에 표시되어야 한다.

2.11.2 선수의 스타트넘버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제작하고, 조직위원회(LOC)가 인쇄 및 배포하는 번호표에 인쇄된다.

2.11.3 SH2 선수는 로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 번호표에 'L'로 표시된 로더 번호표가 함께 발급된다.

2.11.4 시각선수보조는 선수 번호표에 'A'로 표시된 시각선수보조 번호표가 배정된다.

2.11.5 번호표의 크기와 디자인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웹사이트에 게시된 선수 번호표 템플릿에 표시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2.11.6 선수(및/또는 로더/시각선수보조)가 사대에 있는 동안에는 스타트넘버가 항상 식별 가능해야 한다.

2.11.6.1 등받이 점수 A(backrest score A)를 사용하는 선수의 경우, 번호표는 선수의 등 뒤에 착용되어야 한다.

2.11.6.2 등받이 점수 B 또는 C(backrest score B or C)를 사용하는 선수의 경우, 번호표는 사격 의자의 등 뒤에 표시되어야 하며, 자유 착석 높이 표시 테이프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

2.11.6.3 로더 및 시각선수보조는 번호표를 등 뒤에 착용해야 하며, 대회 전 기간 동안 상·하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셔츠 위 허리 부근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2.11.7 선수(및/또는 로더/시각선수보조)에게 스타트넘버가 발급되었으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사격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2.12 기술 항의 및 항소

2.12.1 선수, 팀 임원, 팀 구성원 또는 기타 개인이 본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판단한 경우), 해당 사안은 본 규칙 및 규정과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2.12.2 기술적 사안과 관련된 모든 항의 및 항소는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본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문서 및 양식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12.3 등급분류와 관련된 모든 항의 및 항소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2.12.4 기술 항의 또는 항소에 대한 수수료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 2.12.5 기술 항의 또는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해당 항의 또는 항소 수수료는 조직위원회(LOC)에 귀속된다.

2.13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 2.13.1 대회 주리는 대회에서 발생한 선수의 규칙 위반에 대해 다음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2.13.1.1 규칙의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즉, 선수가 위반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는 경우), 선수 또는 팀 구성원이 위반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먼저 경고(옐로카드)를 부과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위반은 사격 또는 준비 및 조준 시간 중에 시정되어야 한다. 선수가 대회 주리의 지시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수에서 2점을 감점한다(그린카드). 이후에도 감점 조치 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격(DSQ)이 부과된다.
 - 2.13.1.2 규칙의 은폐된 위반이 있는 경우(즉, 선수 또는 팀 구성원이 위반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실격(레드카드, DSQ)이 부과되어야 한다.

2.14 실격

- 2.14.1 본 규칙 및 규정에 실격을 규정한 특정 조항 외에도,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수, 팀 임원, 팀 구성원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회 또는 특정 경기에서의 참가자격을 철회하거나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2.14.1.1 경기 진행의 공정성이나 스포츠맨십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위원회 구성원,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임직원, 대회 주리의 공식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 2.14.1.2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국제연맹 또는 조직위원회(LOC)를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 2.14.1.3 조직위원회 또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마련한 어떠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여기에는 선수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을 위한 절차가 포함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하여 마련된 모든 절차도 포함된다.

2.15 징계 조치

- 2.15.1 본 규칙 및 규정 또는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징계 조치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기술대표가 세계장애인사격연맹과 협의한 후 사안별로 본 규칙 및 규정에 구속되는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 추가적인 조치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의 재량에 따라 취해질 수 있다.

2.16 경기 중 코칭

2.16.1 언어적 코칭

- 2.16.1.1 훈련 및 준비 시간 동안의 언어적 코칭은 허용되나, 해당 코칭은 다른 선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2.16.1.2 훈련 및 준비 시간 동안 코치는 사선에 접근하여 자신의 선수를 대상으로 언어적 코칭을 할 수 있으나, 대회 주리 구성원의 접근이 금지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2.16.1.3 경기 중에는, 코치는 선수 또는 시각선수보조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선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대회 주리 구성원이 해당 요청을 허용해야 한다.
- 2.16.1.4 2.16.1.3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경기 중 사선에서는 모든 선수는 대회 주리 구성원 또는 사선통제관과만 대화할 수 있다(단, SH2 선수는 필요한 경우 로더와 대화할 수 있다).
- 2.16.1.5 R7/R8 결선에서는 교대 시간 동안에만 언어적 코칭이 허용된다.

2.16.2 비언어적 코칭

- 2.16.2.1 모든 경기에서 비언어적 코칭은 허용되며, 서면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코칭은 다른 선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16.3 코칭 규정 위반

- 2.16.4.1 경기 중 본 규정 2.16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팀 임원 또는 선수가 위반한 경우, 해당 경기에서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가 부과되어야 한다. 동일 경기에서 추가 위반이 발생할 경우마다, 선수의 점수에서 2점이 감점되며 팀 임원은 사선 인근을 떠나야 한다.

2.17 경기 결과

- 2.17.1 본 규칙 및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의 채점 절차는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18 순위

- 2.18.1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시즌별 경기당 최고 성과를 낸 선수를 산정하기 위해, 점수 체계를 기반으로 한 세계 및 지역 랭킹을 유지한다. 랭킹 산정 시 선수의 순위와 선수가 달성한 결과를 모두 고려한다.
- 2.18.2 랭킹은 롤링 방식으로 산정된다. 롤링 랭킹에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개최된 모든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랭킹을 산정하는 경우, 2024년 4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서 달성된 모든 결과가 포함된다.
- 2.18.3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스포츠등급현황이 '확정(Confirmed)', '검토(Review)' 또는 '고정 검토일이 있는 검토(Review with a Fixed Review Date)'인 선수만이 랭킹 산정을 위한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18.4 성과 점수

- 2.18.4.1 각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 종료 후, 선수는 자신의 경기 성과에 따라 성과 점수를 획득한다.
- 2.18.4.2 선수는 성과 점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 2.18.4.3 선수는 아래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성과 점수에 상응하는 랭킹 점수를 부여받는다.
- 2.18.4.4 성과 점수는 대회 결과가 확정된 이후 배정되며,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a) 값 A(순위 점수): 해당 경기에서 선수가 본선 및 결선에서 달성한 순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b) 값 B(대회 가중치): 대회의 등급 및 중요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c) 값 C(본선 결과 점수): 해당 경기에서 선수가 달성한 본선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대회 연도 1월 1일 기준의 세계기록으로 나눈 값이다.
- 2.18.4.5 총 성과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공표되며, 수학적 반올림을 적용한다.

2.18.5 유효기간

배정된 성과 점수가 유효한 기간은 해당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의 등급 및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회	코드	유효기간(시즌)
패럴림픽 대회	PG	2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세계선수권대회	WCH	2
지역 대회/선수권대회(지역 랭킹에만 유효)	RG	1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월드컵)	WC	1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승인대회(그랑프리)	GP	1

2.18.5.1 패럴림픽 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획득한 점수는 해당 대회 개최일로부터 2년간 랭킹 시스템에서 유효하다.

2.18.5.2 그 밖의 모든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서 획득한 성과 점수는 랭킹 시스템에서 1년간 유효하다.

2.18.6 값 A(순위 점수)

2.18.6.1 배정되는 값 A는 선수가 달성한 순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선과 결선에서의 순위를 모두 고려한다.

2.18.6.2 순위 점수는 본선 순위(값 A1)와 결선 순위(값 A2)에 따라 배정된다.

순위	본선 순위 점수(A1)	결선 순위 점수(A2)
1위	11	50
2위	10	40
3위	9	30
4위	8	20
5위	7	18
6위	6	16
7위	5	14
8위	4	12
9위 이상	1	0

2.18.6.3 값 A는 본선 순위 점수와 결선 순위 점수의 합으로 산정된다.

$$\begin{array}{ccccccc}
 \text{본선 순위 점수} & & & & \text{결선 순위 점수} & & \\
 \text{(A1)} & + & & = & \text{(A2)} & & \text{값 A}
 \end{array}$$

2.18.6.4 결선이 실시되지 않는 비패럴림픽 경기의 경우, 랭킹 산정 시 결선 순위 점수(값 A2)는 0으로 부여된다.

2.18.6.5 본선에서 1~8위에 해당하였으나 결선에서 DNS("Did Not Start")인 경우, 랭킹 산정 시 결선 순위 점수(값 A2)는 0으로 부여된다.

2.18.7 값 B(대회 가중치)

2.18.7.1 값 B는 대회의 등급 및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회	코드	값 B
패럴림픽 대회	PG	10
세계선수권대회	WCH	8
지역 대회/선수권대회(지역 랭킹에만 유효)	RG	6
월드컵	WC	6
그랑프리	GP	2

2.18.8 값 C(본선 결과 점수)

2.18.8.1 값 C는 선수가 달성한 본선 점수를 해당 경기의 세계기록으로 나눈 값이다(대회 연도 1월 1일 기준).

2.18.8.2 세계 랭킹 및 지역 랭킹 모두에서 세계기록을 사용한다.

$$\frac{\text{본선 점수}}{\text{세계기록}} = \text{값 C}$$

2.18.9 산정

2.18.9.1 경기별 성과 점수는 값 A, 값 B 및 값 C를 곱하여 산정한다.

$$\boxed{\text{값 A (순위 점수)}} * \boxed{\text{값 B (대회 가중치)}} * \boxed{\text{값 C (본선 결과 점수)}} = \boxed{\text{성과 점수}}$$

2.19 기록

2.19.1 세계기록, 지역 기록 및 주니어 세계기록은 WSPS 경기 R1~R11, P1~P6, PT1~PT3, VIS 및 VIP에서 수립될 수 있다.

2.19.2 패럴림픽 대회 기록은 해당 종목의 패럴림픽 대회에서만 수립될 수 있다.

2.19.3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선수권대회 또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에서 획득한 점수만이 기록 인정을 위한 대상이 된다.

2.19.4 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수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스포츠등급현황이 '확정(Confirmed)' 또는 '검토(Review)' 이되 기록이 달성된 대회 이후의 날짜에 '고정 검토일이 있는 검토(Review with a Fixed Review Date)'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2.19.5 기술대표는 기록의 비준 및 인정을 위해 대회 종료 시 기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19.6 주니어 기록

2.19.6.1 주니어 세계기록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수는 해당 대회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이어야 한다.

2.19.7 기록의 정의

2.19.7.1 수립 가능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기록은 다음과 같다.

기록	유형	코드	설명
세계기록	신기록	WR	해당 종목의 결선에서 수립되는 기록으로, 결선 결과만을 사용한다.
	타이	EWR	
주니어 세계기록	신기록	WRJ	
	타이	EWRJ	
지역 기록	신기록	R[Region]	
	타이	ER[Region]	
본선 기록	신기록	QR	해당 종목의 본선에서 수립되는 기록으로, 본선 결과만을 사용한다.
	타이	EQR	
주니어 본선 기록	신기록	QRJ	
	타이	EQRJ	
지역 본선 기록	신기록	QR[Region]	
	타이	EQR[Region]	
팀 기록	신기록	WR	팀 경기에서 수립되는 기록으로, 지명된 3명의 팀 구성원이 기록한 본선 점수의 합산을 사용한다.
	타이	EWR	
팀 지역 기록	신기록	R[Region]	
	타이	ER[Region]	
패럴림픽 기록	신기록	PR	해당 종목의 패럴림픽 대회 결선에서 수립되는 기록으로, 결선 결과만을 사용한다.
	타이	EPR	
패럴림픽 본선 기록	신기록	PQR	해당 종목의 패럴림픽 대회 본선에서 수립되는 기록으로, 본선 결과만을 사용한다.
	타이	EPQR	

지역 종합 대회 기록	신기록	GR	a) 해당 종목의 지역 종합대회 결선에서 수립되는 기록으로, 결선 결과만을 사 용한다.
	타이	EGR	
지역 종합 대회 본선 기록	신기록	GQR	b) 해당 종목의 지역 종합대회 본선에서 수립되는 기록으로, 본선 결과만을 사 용한다.
	타이	EGQR	

WSPS 규칙

3 복장 및 장비 규칙

3.1 국제사격연맹(ISSF) 복장 규정 준수

3.1.1 경기장 내 사대 및 시상식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국제사격연맹(ISSF)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1.2 선수는 규칙 3.2에 명시된 세계장애인사격연맹(WSPS) 고유의 복장 규정 또한 준수해야 한다.

3.2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고유 복장 규정(재킷, 바지 및 신발)

3.2.1 사격 재킷("세계장애인사격연맹 사격 재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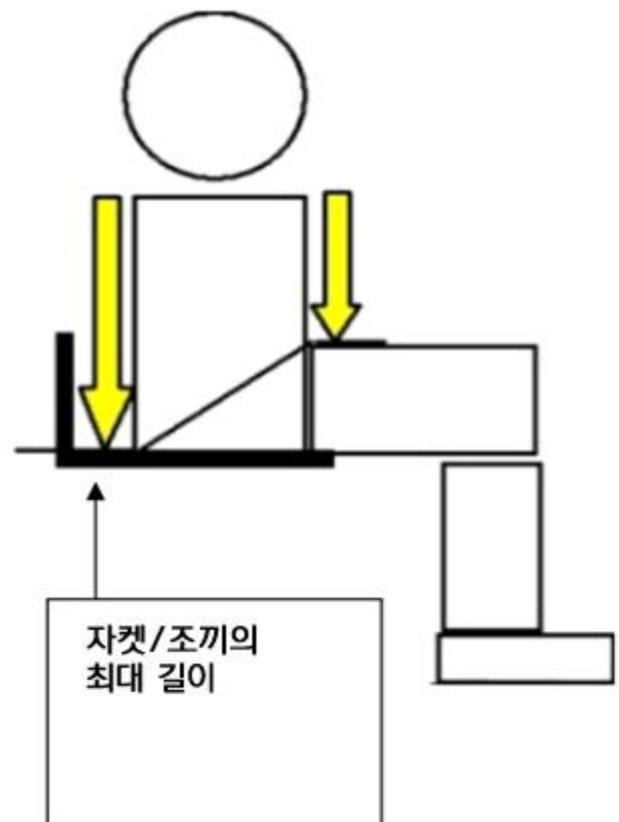
3.2.1.1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사격 재킷의 최대 길이는 앞면에서는 사타구니까지, 뒷면에서는 쿠션 상단까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2.1.2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사격 재킷의 길이는 입사 사격 자세에서 측정한다.

3.2.1.3 선수는 경기 중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사격 재킷의 어떠한 부분에도 앉아서 안 된다.

3.2.1.4 스포츠등급 SH1B 소총, SH1C 소총 및 SH2 소총 선수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사격 재킷을 착용해야 한다. 복사 자세로 사격하는 선수는 국제사격연맹(ISSF) 사격 재킷을 사용할 수 있다.

3.2.1.5 스포츠등급 SH1A 소총 선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따라 국제사격연맹 사격 재킷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	형식	규정
Kneeling(슬사)	ISSF 자세에 따른 사격	허용: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따른 재킷 사용
	사격의자에서 사격	허용: 상단 3개의 재킷 단추만 잠글 수 있으며, 단추는 갈비뼈 하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점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추가 단추는 사용할 수 없다.
Prone(복사)	ISSF 자세에 따른 사격	허용: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따른 재킷 사용
	사격의자에서 사격	허용: 상단 3개의 재킷 단추만 잠글 수 있으며, 단추는 갈비뼈 하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점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추가 단추는 사용할 수 없다.
Standing(입사)	높은 스톨에서 사격 또는 자유 입사	허용: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따른 재킷 사용
	사격의자에서 사격	불가: 국제사격연맹(ISSF) 재킷 사용 불가

3.2.1.6 각 대회에서 선수 1인당 국제사격연맹(ISSF) 재킷은 최대 1벌까지만 허용되며, 장비통제를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3.2.1.7 단추가 없는 재킷

a) 재킷에 단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재킷은 상기 규칙 3.2.1.1 및 3.2.1.2에 따라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3.2.2 사격 바지

3.2.2.1 스포츠등급 SH1B, SH1C 및 SH2의 모든 선수에게 사격 바지 착용은 금지된다.

3.2.2.2 스포츠등급 SH1A 소총 선수는, 높은 스톨에서 사격하거나 자유 입사 자세, 무릎 자세 및 복사 자세에서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따라 사격 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3.2.2.3 R7 및 R8 경기에서, 하지 의지/보조기를 사용하는 선수는 사격의자에서의 슬사 자세와 복사 자세에서 사격 바지를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a) 의지/보조기로 인해 사격 바지를 벗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 b) 슬사 자세에서 사격 바지의 다리 지퍼와 허리 밴드가 열린 상태일 것.

3.2.3 신발

3.2.3.1 경기장 사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3.2.3.2 유효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선수는 정형외과용 신발 또는 국제사격연맹(ISSF) 복장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신발(예: 샌들)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a) 이러한 예외는 등급분류 패널이 심사하여 결정하며, 선수의 등급분류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기록된다; 그리고
- b) 해당 신발은 장비통제 시 유연성 검사를 받지 않는다.

3.3 장비

3.3.1 선수는 본 규칙 및 규정과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을 준수하는 장비만을 사용해야 한다. 대회 주리가 선수에게 부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거나 본 규칙 및 규정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장비는 사용이 금지된다.

3.3.2 모든 장비는 선수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3.3.3 본 규칙 및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선수는 신체의 어떠한 부분이나 장비로도 바퀴 또는 측면판(sideboards)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3.3.4 선수와 그 장비는 사격 지점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있어야 하며, 사선 뒤에 위치해야 한다.

3.3.4.1 소총 거치대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다.

3.3.5 선수는 소총의 그립력을 증가시키는 재료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3.3.5.1 해당 개조는 규칙 3.3.1을 준수해야 한다;
- 3.3.5.2 해당 재료는 선수와 소총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여전히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 3.3.5.3 소총은 규정된 치수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3.3.5.4 손잡이 개조를 하고자 하는 선수의 요청은 기술 평가 과정에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패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장비검사

3.4.1 팀 임원 및 코치는 선수의 장비와 복장이 본 규칙 및 규정과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공동 책임을 진다.

3.4.2 국제사격연맹(ISSF) 장비는 국제사격연맹 규칙에 따라 검사된다.

3.4.3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고유 장비

3.4.3.1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고유 장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a) 스트랩
- b) 의수/의족
- c) 사격 테이블
- d) 보정 블록
- e) 10cm 블록
- f) 사격의자
- g) SH2 소총 지지대
- h) 장전 장치(권총 종목에 한함)
- i) 방아쇠 연장 장치, 손잡이 및 방아쇠 개조 장치

3.4.3.2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고유 장비에 대한 장비검사는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4.3.3 선수는 각 경기 시작 전에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고유 장비 및 복장을 공식 검사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의 일부로서,

- a) 선수는 유효한 신분증(ID Card)과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그리고
- b)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장비검사 시트(Equipment Control Sheet)’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3.4.3.4 각 선수의 장비는 각 경기 시작 전에 사선에서 대회 주리에 의해 검사될 수 있다.

3.4.4 무작위 장비검사는 대회 주리가 경기 종료 후 장비검사 구역에서 직접 실시한다.

3.5 스트랩

3.5.1 선수는 경기 중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트랩을 잡거나 만지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3.5.2 스트랩의 폭은 5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5.3 무릎 아래에는 사격의자에 연결된 무릎 하부 스트랩 1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3.5.4 무릎 위의 경우, 다리는 무릎 위에서 한 번 서로 묶을 수 있으나, 사격의자에는 묶을 수 없다.

3.5.5 무릎 위 절단이 양측 모두에 해당하는 선수(의수/의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절단부를 가로질러 스트랩으로 사격의자에 고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3.6 방아쇠 연장 장치 및 방아쇠 개조

3.6.1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따라, 방아쇠의 형태/모양은 국제사격연맹 규칙에 명시된 치수 범위 내에 있는 한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다.

3.6.2 방아쇠의 형태는 자유로우나, 방아쇠는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허용된 치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6.2.1 방아쇠 연장 장치: 표준 방아쇠와 비교하여 개조가 이루어졌으나, 국제사격연맹 규칙에 명시된 치수 범위 내에 있고 방아쇠 가드 내부에 위치한 방아쇠를 말한다.

3.6.2.2 방아쇠 개조 장치: 표준 방아쇠와 비교하여 개조가 이루어졌으며, 방아쇠 가드 외부에 위치하거나 국제사격연맹 규칙에 명시된 치수 범위를 초과한 방아쇠를 말한다(부록 4 참조).

3.6.3 방아쇠 개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6.3.1 선수는 방아쇠 개조를 사용할 의학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3.6.3.2 방아쇠 개조 사용에 대한 선수의 요청은 기술 평가 과정에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패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기술대표와 협의하여 제안된 방아쇠 개조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3.6.3.3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아쇠 개조는 선수의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기록되어야 한다.

3.6.4 공기 작동식 방아쇠 시스템(블로잉 시스템 및 공압 시스템 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3.7 사격의자

3.7.1 “사격의자”란 선수가 사격을 위해 앉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휠체어, 의자, 좌석, 스톨 및 높은 스톨이 포함된다.

3.7.1.1 높은 스톨은 선수가 발을 지면에 둔 상태에서 입사 자세를 유지하면서 좌석에 의해 지지받아 사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해당 물체가 높은 스톨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재량권을 가진다. 소총/권총 경기에서 높은 스톨을 사용하는 선수는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a) 좌석의 최소 높이는 선수의 허벅지 중간 높이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허벅지 중간 높이란, 무릎 관절과 고관절 사이의 길이를 의미하며(대퇴골을 따라 측정한다);
- b) 좌석의 최대 높이는 선수의 다리 안쪽 길이에서 7cm를 뺀 값이다. 이 측정은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높은 스톨의 높이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기재되어야 한다;
- c) 스톨 하부의 바닥 면적은 60×6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스톨의 하부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3개 또는 4개의 독립된 다리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리 간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
- d) 좌석은 원형 또는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고관절 절단이 있는 선수의 경우 자전거 안장 형태의 좌석 사용이 허용된다;
- e) 선수의 발은 높은 스톨의 바닥 부분에 닿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 f) 선수의 양발은 좌석의 전방부보다 앞쪽에 위치해야 한다.

3.7.2 높은 스톨을 제외한 사격의자에서 사격하는 선수의 경우, 총열 중심선은 바닥에서 15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바닥으로부터 측정).

3.7.3 모든 사격의자는 장비검사 과정에서 선수의 사격 자세 상태로 점검되며, 각 경기 시작 전,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직후에 사선에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또는 기술대표가 단독 재량으로 해결한다.

3.7.4 사격의자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선수는 어떠한 인공적 보조 없이 스스로 사선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3.7.4.1 본 규칙의 적용 목적상, 인공적 보조의 예에는 사격의자를 사선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도구가 포함되며(예: 드라이버).

3.7.4.2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휠체어의 브레이크는 본 규칙에서 말하는 인공적 보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7.4.3 본 규칙의 목적상, 다른 개인(예: 코치 또는 로터)이 선수를 사선에서 이동시키는 데 제공하는 물리적 보조(예: 휠체어 밀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7.5 종목별 팔걸이, 측면판 및 테이블에 관한 규칙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자세	팔걸이	측면판	테이블
슬사	팔걸이를 테이블에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팔걸이는 추가적인 지지 또는 안정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규칙 4.2.1.2 참조).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다만, 테이블 프레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지지 또는 안정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규칙 4.2.1.2 참조).
복사	팔걸이를 테이블에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허용된다. 다만, 몸통에 대한 추가적인 지지 또는 안정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허용된다(규칙 4.2.2.1에 명시된 제한 조건 적용).
	사격의자의 팔걸이 중 테이블에 고정되지 않는 팔걸이는 제거해야 한다.		
입사	허용되지 않는다. 규칙 4.2.3.2 참조.	허용되지 않는다. 규칙 4.2.3.2 참조.	허용되지 않는다.

3.7.6 손잡이 및 측면 지지대는 등받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7.7 휠체어 바퀴의 높이는 입사 자세에서 선수의 고관절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바퀴에 손을 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3.7.8 규칙 3.7에 따라, 골반 또는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격의자에 어떠한 재료를 추가하거나 구조를 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7.8.1 선수는 경기 중, 결선을 포함하여, 대회 주리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전자식 의자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3.7.9 선수는 골반 또는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격의자의 측면 지지대 또는 바퀴에 기대서는 안 된다.

3.7.9.1 몸통의 측면은 측면 지지대에 닿을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해 척추의 추가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7.9.2 선수의 사격 자세 중에는 척추가 지지대에 닿아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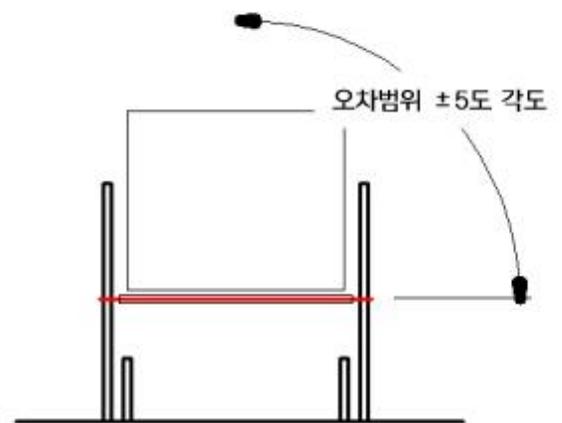
3.7.10 좌석 패드 및 좌석 쿠션:

3.7.10.1 본 규칙 3.7.10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 패드 또는 좌석 쿠션의 사용은 허용된다. 좌석 패드 또는 쿠션의 구조, 형태 및 두께는 사격의자 설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좌석 패드 또는 쿠션은 사격의자의 착석 영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예: 쿠션이 바퀴, 측면판 또는 등받이에 닿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7.10.2 사격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좌석 패드 또는 좌석 쿠션의 최대 크기는 50×50cm이다.
- 3.7.10.3 공기 주입식 에어셀 쿠션은 허용되지 않는다.
- 3.7.10.4 등받이와 선수의 신체 사이에 좌석 패드 또는 좌석 쿠션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7.10.5 모든 좌석 패드 및 좌석 쿠션은 장비검사 과정에서 점검되며, 각 경기 시작 전,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직후 사선에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기술대표가 단독 재량으로 해결한다.

3.7.11 좌석 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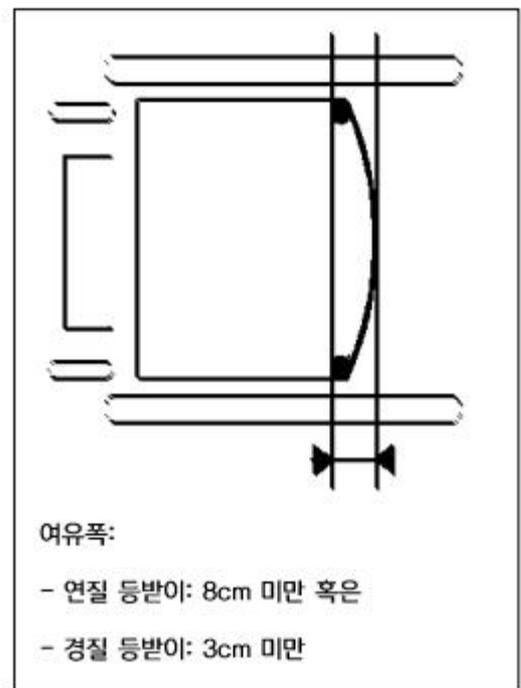
- 3.7.11.1 규칙 3.7.11.2 및 규칙 3.7.11.3의 적용을 받으며, 사격의자에 앉은 선수의 좌석 각도와 등받이 각도는 자유이다.
- 3.7.11.2 사격의자의 좌석 각도는 어느 방향이든 최대 ±5도까지 허용된다.
- 3.7.11.3 측면에서 본 경우, 휠체어의 중심축은 수평(±5도)을 유지해야 한다.



3.7.12 등받이 여유폭

- 3.7.12.1 등받이는 경질 재질 또는 연질 재질로 제작될 수 있다.

- a) 연질 재질로 제작된 등받이의 경우, 등받이의 최대 여유폭(늘어남)은 8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수직 측면 지지대의 전면에서 등받이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의 거리).



- b) 경질 재질로 제작된 등받이의 경우, 등받이는 평면이거나 곡면일 수 있다. 다만, 등받이의 최대 여유폭(곡면의 깊이), 즉 수직 측면 지지대의 전면에서 등받이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의 거리는 3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등받이에 압축 가능한 재질의 쿠션이 적용된 경우에도, 해당 재질이 압축되었을 때 곡면의 최대 깊이는 3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7.12.2 등받이의 여유폭은 선수가 사격의자에 앉아 사격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3.7.13 등받이 높이

3.7.13.1 점수 A

- a) 선수는 사격 중 등받이에 기대지 않는 방식으로, 사격의자에 어떠한 높이의 등받이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 b) 사격 시 선수와 등받이 지지대 사이에는 명확히 접촉이 없어야 한다.

3.7.13.2 점수 B

- a) 선수의 전체 등 길이 중 최소 60%가 등받이 위에 위치해야 한다.
- b) 측정은 제7경추(C7) 척추돌기의 중앙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c) 해당 측정값은 ‘최소 가시 자유 높이(등받이 높이)’로서 선수의 등급분류 기록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기록된다.

3.7.13.3 점수 C

- a) 측정은 제7경추(C7) 척추돌기의 중앙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b) 해당 측정값은 ‘최소 가시 자유 높이(등받이 높이)’로서 선수의 등급분류 기록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기록된다.

3.7.13.4 등받이의 어떠한 부분도 선수의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명시된 “등받이 위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7.13.5 대회 주리는 다음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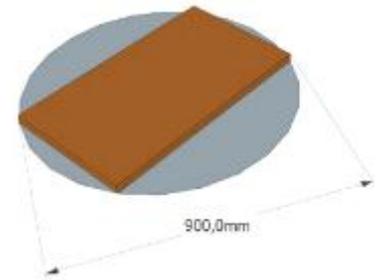
- a) 각 선수의 가시 자유 높이를 측정하고, 해당 값이 선수의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기재된 최소 가시 자유 높이보다 낮지 않음을 확인한다;
- b) 선수의 사격 재킷 등판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가시 자유 높이를 표시하되, 테이프의 하단 가장자리가 가시 자유 높이를 나타내도록 한다. 테이프는 경기 기간 동안 항상 가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c) 가시 자유 높이는 스타트번호/백번호에 표시되어야 한다.

3.8 사격 테이블

3.8.1 소총 종목

3.8.1.1 크기 - 사격 테이블의 모든 구성 요소는(형태 또는 형식과 무관하게)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a) 직경 90c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b) 사선 내 규정된 사격 지점의 치수 범위 내에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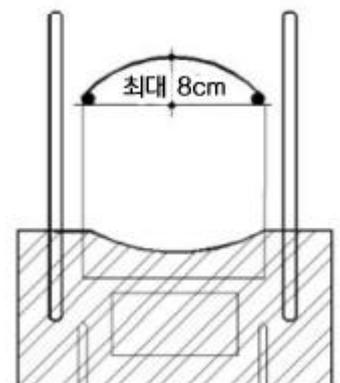


3.8.1.2 형태

- a) 사격 테이블에는 소형 물품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의 돌출 가장자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에게 추가적인 안정성 또는 지지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b) 사격 테이블의 형태는 자유이다;
- c) 사격 테이블의 형태가 곡선형(예: U자형)인 경우, 곡선의 폭은 선수의 몸통보다 넓어야 하며, 복사 자세에서 좌우 어느 쪽의 선수 몸통도 동시에 테이블에 닿아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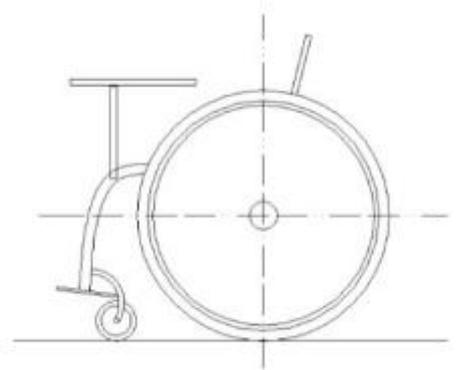
3.8.1.3 형태 - 사격 테이블의 구성 방식

- a) 사격의자에 부착되어 있거나 독립적으로 설치된 형태여야 한다;
- b) 단일 테이블 또는 여러 개의 소형 개별 테이블로 구성될 수 있다;
- c) 두 개 이상의 소형 개별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I. 하나의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도록 서로 결합되거나 함께 배치되어야 하며;
 - II. 결합된 테이블의 전체 표면은 사격 테이블에 대해 규정된 모든 요구 사항(크기, 각도, 형태)을 충족해야 한다.



3.8.1.4 각도

- a) 사격 테이블은 수평이거나 바닥과 동일한 각도여야 한다(테이블 중앙에서 측정).
- b) ± 5 도의 편차는 허용된다.
- c) 상지 길이가 서로 다른 선수는 복사 자세에서 사격할 때 짧은 쪽 상지 아래에 보정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등급분류 패널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허용되는 경우 선수의 등급분류 기록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표기되어야 한다.



3.8.1.5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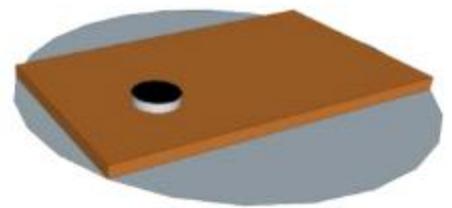
- a) 사격 테이블은 복사 자세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의 지지 또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b) 복사 자세에서는 테이블이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선수는 복부를 이용해 의자의 좌우 어느 한쪽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3.8.1.6 쿠션 처리

- a) 사격 테이블 또는 보드는 최대 두께 2cm의 압축 가능한 재질로 쿠션 처리할 수 있다.
- b) 테이블의 쿠션 재질은 양쪽 팔꿈치 위치에서 동일한 두께여야 한다.
- c) 테이블 또는 보드, 또는 쿠션 처리된 재질에 홈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8.1.7 슬사 자세에서의 팔꿈치 지지 테이블

- a) 슬사 자세에서 팔꿈치를 지지하기 위한 최대 지지 면적은 직경 10cm이다. 해당 지지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 I. 직경 10cm의 소형 사격 테이블; 또는
 - II. 더 큰 사격 테이블에 부착되는 추가 장착 지지대(이하 '10cm 블록')로, 직경 10cm이며 두께는 최소 10mm인 탈착식 보드.



3.8.1.8 사격 스탠드지지

- a) 소총 받침대를 위한 별도의 추가 보드 또는 테이블은 허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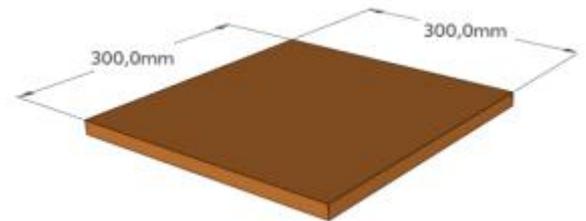
3.8.2 권총 테이블

3.8.2.1 사대 벤치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선수가 권총을 올려두고 장전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거나, 또는 벤치의 구조로 인해 선수의 사격 자세가 저해되어 안전한 장전 절차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소형 테이블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 a) 해당 추가 테이블은 장비검사 시 제시되어야 한다;
- b) 장비검사 담당 대회 주리는 사안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소형 테이블의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 c) 해당 테이블의 사용 방식은 사전에서 대회 주리가 점검하여, 선수가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3.8.2.2 허용되는 경우, 추가 테이블은 다음의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 a) 최대 크기: 30cm × 30cm.
- b) 최대 높이: 100cm.
- c) 해당 테이블은 사격 자세에서 선수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지지 또는 안정성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3.9 SH2 소총 지지대

3.9.1 모든 SH2 선수는 소총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해 승인된 지지대(부록 5 참조)를 사용해야 한다.

3.9.2 등급분류 패널은 SH2 스포츠등급 선수의 사격 팔(소총을 어깨에 거는 팔)에 대한 근력을 평가하여, 소총 지지대에 사용될 스프링이 약한지 또는 강한지를 판단한다.

3.9.3 선수의 평가 점수에 따라 하위 등급 'a' 또는 'b'가 부여된다.

3.9.4 해당 하위 등급은 선수의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기록되며, 소총 지지대에 사용되는 스프링 종류를 결정한다:

하위 등급	스프링 특성
a	약한 스프링(흰색 플라스틱 부품) - 최소 유연성 35mm
b	강한 스프링(검은색 플라스틱 부품) - 최소 유연성 25mm

3.9.5 사격 스탠드는 테이블 또는 삼각대에 고정될 수 있다.

3.9.6 소총을 지지하기 위한 다른 지지대 또는 기계 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3.9.7 사격 자세에서 소총을 고정하거나 사격 스탠드를 정렬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 또는 물질도 소총이나 사격 스탠드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3.9.8 사격 시 선수의 손은 스프링 앞쪽에 위치하거나 스프링의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9.9 사격 스탠드의 핀과 스프링은 앞뒤 방향으로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3.9.10 지지 스탠드의 하부는 단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잔여 길이는 최소 20mm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장비검사 시 지지 스탠드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9.11 요크(소총 고정대)

3.9.11.1 소총은 요크의 양쪽에 동시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3.9.11.2 요크의 폭은 소총 몸체/총신의 폭보다 최소 1cm 이상 넓어야 한다.

3.9.11.3 요크 내부에 사격 장갑의 표면과 유사한 재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요크의 측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9.12 균형점

3.9.12.1 소총의 균형점은 장비검사 시 표시되어야 한다. 소총은 소총 지지대 위에서 해당 균형점을 기준으로 $\pm 5\text{cm}$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며, 총 10cm 범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소총 전체는 이 10cm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한다.

3.9.12.2 가스식 또는 압축공기식 소총의 균형점은 충전된 상태에서 측정한다.

3.9.12.3 지지 스탠드 상부의 총 중량은 200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스프링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승인 모델이어야 한다(부록 5 참조).

3.9.13 스프링 유연성 시험용 시험봉(부록 5)

3.9.13.1 스프링 유연성 시험에 사용되는 중량 및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a) 봉 1개: 250g $\pm 2\text{g}$ (영점 조절에 사용);

b) 봉 2개: 720g $\pm 2\text{g}$ (유연성 시험에 사용).

3.9.13.2 모든 스프링은 경기 전 장비검사 시 부록 5에 따라 점검되어야 한다.

3.9.13.3 선수는 경기 중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프링(10m용 및 50m용)을 사용할 수 있다. 두 스프링 모두 장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4 소총 규칙

4.1 경기 종목 및 시간

4.1.1 모든 소총 종목의 시간은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른다.

4.1.2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자체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종목을 취소할 수 있다.

4.1.3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대회는 다음의 소총 종목(이하 “소총 종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종목	종목명(정식)	성별	스포츠 등급	격발 수	시간(전 자표적)	시간(표적이 송기·타이 머 경기)
R1	R1 공기소총 입사 남자 SH1	남자	SH1	60	1:15	1:30
R2	R2 공기소총 입사 여자 SH1	여자	SH1	60	1:15	1:30
R3	R3 공기소총 복사 혼성 SH1	혼성	SH1	60	0:50	1:00
R4	R4 공기소총 입사 혼성 SH2	혼성	SH2	60	1:15	1:30
R5	R5 공기소총 복사 혼성 SH2	혼성	SH2	60	1:00	1:10
R6	R6 50m소총 복사 혼성 SH1	혼성	SH1	60	0:50	1:00
R7	R7 50m소총 3자세 남자 SH1	남자	SH1	60 (슬사/복사/입사 각 20발씩)	1:45	2:00
R8	R8 50m소총 3자세 여자 SH1	여자	SH1	60 (슬사/복사/입사 각 20발씩)	1:45	2:00
R9	R9 50m소총 복사 혼성 SH2	혼성	SH2	60	1:00	1:10
*R10	R10 공기소총 복사 혼성팀 SH1	혼성	SH1	2명(선수) × 각 30발	0:25	해당 없음
*R11	R11 공기소총 복사 혼성팀 SH2	혼성	SH2	2명(선수) × 각 30발	0:25	해당 없음

*패럴림픽 종목 아님

- 4.1.4 R3 종목 및 모든 SH2 종목에서는 다른 선수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 매 세 번째 사선마다 한 사선을 비워 두는 것이 권장된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기술대표가 내린다.
- 4.1.5 선수는 대회별로 거리(10m 및 50m)당 하나의 소총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제사격연맹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1.6 R7 및 R8 종목에서는, 자세 전환 시간 동안 선수 1인당 코치/팀 임원 1명이 선수를 보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자세 전환은 선수 본인이 주도해야 한다.
- 4.1.6.1 본선 및 결선에서 선수는 소총 조정과 함께 자세 전환을 주도한다. 코치/팀 임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선수 보조가 가능하다.
- (a) 선수가 자세 전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총을 사격 테이블 또는 안정된 플랫폼 위에 올려놓는 행위;
 - (b) 선수가 요청한 도구 또는 장비를 부착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전달하는 행위;
 - (c) 사선에서 휠체어의 안정화를 보조하는 행위;
 - (d) 코치/팀 임원이 선수에 의해 직접 수행되지 않는 방식의 추가 보조를 요청하는 경우, 대회 주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의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대회 주리의 재량에 따른다.
- 4.1.7 사용하지 않는 장비 또는 추가 의자는 경기장에 남겨둘 수 없다.
- 4.1.8 선수는 장비를 지지하기 위해 의자를 사용할 수 없다.
- 4.1.9 결선
- 4.1.9.1 세계장애인사격연맹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결선에서는 본 규칙에 따른 경기 시간 규정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웹사이트에 게시된 결선 지시 문서를 따른다.
- 4.1.9.2 결선에서 로더는 선수의 발 뒤쪽 기준 사선 뒤 1m 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발 시리즈 동안 로더는 'STOP'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대기한 후 선수에게 복귀해야 한다. 로더는 사선에서의 마지막 사격 시에는 장전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4.1.9.3 선수(및 로더)는 'LOAD'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소총에 펠릿/탄두가 장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1.9.4 'LOAD' 명령이 내려진 후 장전 절차는 5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단, SH2 종목의 경우 선수/로더는 'LOAD' 명령이 내려진 후 10초 이내에 장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4.1.9.5 로더는 다음과 같이 선수를 보조해야 한다:

(a) 선수 옆에 서서 장전 과정 중 소총의 안전을 확보하는 행위; 그리고

(b) 디숄더(de-shoulder) 및/또는 자세 재조정 과정에서 소총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수를 보조하는 행위.

4.1.9.6 대회에서의 첫 번째 위반에 대한 제재는 옐로 카드이며, 해당 대회에서 두 번째 위반 시에는 그린 카드(2점 감점)가 부과되고, 동일 대회에서 세 번째 위반이 발생할 경우 레드 카드(실격)가 부과된다.

4.1.9.7 결선에서 탈락한 경우, 모든 선수(SH2 포함)는 즉시 사선을 벗어나 코치 옆에 배정된 경기장 측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코치/로더는 선수를 보조할 수 있다.

4.2 사격 자세

4.2.1 슬사

4.2.1.1 하지 결손이 있는 SH1A 선수는, 해당 다리를 지지하기 위해 의수/의족 또는 최대 높이 35cm의 스톨을 사용하여 국제사격연맹(ISSF) 슬사 자세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표기된 경우에 한함).

4.2.1.2. 사격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a) 선수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 3.7 및 3.8을 준수해야 하며;

b) 한쪽 팔꿈치만 테이블 또는 보드 위에 올려둘 수 있고, 신체는 보드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하며;

c) 지지하는 전완은 수평으로부터 30도 이상 각도를 형성해야 한다. 팔꿈치의 접점만이 10cm 블록 위에 지지될 수 있으며;

d) 보드/테이블 프레임/팔걸이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확보해서는 안 되며;

e) 테이블/보드에 고정되지 않는 사격의자의 팔걸이는 제거되어야 한다.



4.2.2 복사

4.2.2.1 SH1 및 SH2 선수는 등받이와 테이블 사이에 신체를 고정해서는 안 된다. 등받이 또는 테이블 중 하나에 기대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4.2.2.2 상지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 복사 자세에서 사격 시 짧은 쪽 상지 아래에 보정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등급분류 패널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허용되는 경우 선수의 등급분류 기록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표기되어야 한다.

4.2.2.3 **50m 소총 복사:** 선수는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명시된 복사 자세로 사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격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 3.7 및 3.8을 준수해야 한다.

4.2.2.5 **10m 공기소총 복사:** 선수는 엎드린 자세를 취할 수 없으며, 사격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 3.7 및 3.8을 준수해야 한다.

4.2.2.5 SH1

a) 양쪽 팔꿈치는 테이블 또는 보드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

b) 상완은 테이블 또는 보드에 닿아서는 안 된다(상완 아래 부분의 테이블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

c) 전완은 수평으로부터 30도 미만의 각도를 형성해서는 안 되며, 전완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d) 상지 결손이 있는 선수의 경우, 의수/의족이 소총을 쥐지 않으며 팔꿈치가 고정되지 않는 한 소총을 의수/의지로 지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e) 전완과 사격 재킷의 소매는 국제사격연맹 규칙에 따라 테이블 표면에서 명확히 떠 있어야 한다.

4.2.2.6 SH2

- a) 슬링 사용은 금지된다.
- b) 선수의 장애 상태가 허용하는 경우, 양쪽 팔꿈치는 테이블 또는 보드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
- c) 선수의 장애로 인해 양쪽 팔꿈치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둘 수 없는 경우, 사격하지 않는 팔은 테이블 위, 소총 위 또는 신체 위에 올려둘 수 있다. 단, 해당 팔은 명확히 이완된 상태여야 하며, 추가적인 지지나 부당한 이점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d) 상완은 테이블 또는 보드에 닿아서는 안 된다(상완 아래 부분의 테이블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

4.2.3 입사

4.2.3.1 몸통 기능 점수 A를 가진 선수는 자유 입사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으로 인증된 의수/의족 또는 보조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공적 지지도 사용하지 않고 서서 사격해야 한다.

4.2.3.2 사격의자 및 사격 테이블의 팔걸이와 측면판은 제거되어야 한다.

4.2.3.3 높은 스톨에서 사격하는 경우, 선수는 균형을 잃지 않고 상체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4.2.3.4 SH1

- a) 소총은 국제사격연맹 규칙에 따라 오직 팔로만 지지되어야 하며, 어떠한 추가적인 지지도 허용되지 않는다.
- b) 팔의 어느 부분도 사격의자의 어떠한 부분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 c) 선수의 팔꿈치는 무릎, 바퀴에 닿거나 흉곽, 고관절 또는 복부 이외의 부위로부터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본 규칙을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위반에는 옐로 카드, 두 번째 위반에는 그린 카드(2점 감점), 세 번째 위반에는 레드 카드(실격)가 부과된다.

4.2.3.5 SH2

- a) 상지 절단 선수의 경우, 입사 자세에서 의수/의지로 소총을 잡거나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b) 입사 자세에서는 모든 선수가 각 사격 사이마다 디숄더링/어깨 이격(de-shoulder)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수행해야 한다(개머리판과 어깨 사이의 물리적 접촉 제거). 각 사격 사이에는 최소 3cm 이상의 명확한 분리가 보여야 한다.
- c) 사격 사이에 디숄더링/어깨 이격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는 첫 번째 위반 시 옐로 카드, 두 번째 위반 시 그린 카드(2점 감점), 세 번째 위반 시 레드 카드(실격)이다.



4.3 로더(SH2에 한함)

4.3.1 로더는 SH2 종목에 출전하는 SH2 선수에게만 적용되며,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

4.3.1.1 등급분류 패널은 선수에게 로더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는 선수의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표시된다.

4.3.2 로더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4.3.2.1 경기 중 말하거나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

4.3.2.2 선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총을 장전하고/또는 조준기를 조정할 수 있다;

4.3.2.3 총열을 만지지 않고 소총을 장전해야 한다. 소총의 후방부(예: 볼대 또는 개머리판)를 만지면서 장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3.3 SH2 본선에서는 매 세 번째 사선마다 하나의 사선을 비워 둔다. 이 비워 둔 사선은 로더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4.3.3.1 배정된 사선에 따라 로더는 선수의 좌측 또는 우측에 서야 하며, 이는 배정된 사선에 의해 지정된다.

4.3.3.2 로더의 위치(선수의 좌측/우측)는 해당 사선에 따라 고정되며, 선수의 반대편으로 변경할 수 없다.

4.3.3.3 로더는 경기 기간 동안 지정된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사격 사이에 사선 뒤쪽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4.3.4 로더가 선수의 코치이기도 한 경우, 서로 대화를 나누기 전에 규칙 2.16에 따라 사선통제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5. 권총 규칙

5.1 경기 종목 및 시간

5.1.1 모든 권총 종목의 시간은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른다.

5.1.2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자체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종목을 취소할 수 있다.

5.1.3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대회는 다음의 권총 종목(이하 “권총 종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종목	종목명(정식)	성별	스포츠 등급	격발 수	시간(전자 표적)	시간(표적이송기 · 타이머 경기)
P1	P1 공기권총 남자 SH1	남자	SH1	60	1:15	1:30
P2	P2 공기권총 여자 SH1	여자	SH1	60	1:15	1:30
P3	P3 25m권총 혼성 SH1	혼성	SH1	6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P4	P4 50m권총 혼성 SH1	혼성	SH1	60	1:30	1:45
*P5	P5 스탠다드공기권총 혼성 SH1	혼성	SH1	4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P6	P6 공기권총 혼성팀 SH1	혼성	SH1	2명(선수) × 각 30발	0:30	해당 없음

*패럴림픽 종목 아님

5.1.4 P3 종목은 국제사격연맹(ISSF) 25m 권총 규칙에 따라 사격한다.

5.1.4.1 25m 사대의 벤치 높이가 선수에게 45도 각도의 준비 자세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준비 자세’는 벤치 표면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허용될 수 있다.

5.1.4.2 ‘준비 자세’ 동안 권총을 벤치에 올려둘 수 없다.

5.1.4.3 선수는 수정된 ‘준비 자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의 허용 여부는 기술대표의 재량에 따른다.

5.1.5 P5(10m 공기권총 스탠다드) 종목은 부록 6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사격한다.

5.1.6 사용하지 않는 장비 또는 추가 의자는 경기장에 남겨둘 수 없다.

5.1.7 선수는 장비를 올려두기 위해 의자를 사용할 수 없다.

5.1.8 결선

- 5.1.8.1 결선에서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웹사이트에 게시된 ‘결선 지시(Finals Commands)’ 문서에 명시된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상의 경기 시간 규정을 따른다. 선수는 ‘LOAD’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권총에 연지탄/화약실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1.8.2 장전 절차는 종목 P1, P2 및 P4에서 ‘LOAD’ 명령이 내려진 후 5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5.1.8.3 결선에서 탈락한 경우, 모든 선수는 즉시 사선을 벗어나 코치 옆에 배정된 경기장 측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코치는 선수를 보조할 수 있다.

5.2 사격 자세

- 5.2.1 SH1A 선수는 자유 입사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으로 인증된 의수/의족 또는 보조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공적 지지도 사용하지 않고 서서 사격해야 한다.
- 5.2.2 사격의자 및 사격 테이블의 팔걸이와 측면판은 제거되어야 한다.
- 5.2.3 사격하지 않는 팔/손은 사격의자 위에 있거나, 선수에게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위치에 놓여서는 안 된다(국제사격연맹 규칙에 따름).
- 5.2.4 다리와 사격하지 않는 팔 사이에 추가 물품(예: 쿠션)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3 장전 장치(안전기)

- 5.3.1 장전 안전은 국제사격연맹 규칙을 따른다. 단, 아래 규칙 5.3.2는 예외로 한다.
- 5.3.2 권총을 안전하게 장전 또는 장전 해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전 장치는,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선수의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명시된 경우, 항상 사용해야 한다.
 - 5.3.2.1 장전 장치는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검사 과정에서 대회 주리에 의해 점검된다.

6 산탄총 규칙

6.1 경기 종목 및 시간

6.1.1 모든 산탄총 종목 및 시간은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른다.

6.1.2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자체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종목을 취소할 수 있다.

6.1.3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대회는 다음의 산탄총 종목(이하 “산탄총 종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종목	종목명	성별	스포츠등급	표적 수	준비 시간 제한
*PT1	PT1 트랩 좌석	혼성	SG-S	125 (1일차 75 / 2일차 50)	15초
*PT2	PT2 트랩 하지	혼성	SG-L	125 (1일차 75 / 2일차 50)	15초
*PT3	PT3 트랩 상지	혼성	SG-U	125 (1일차 75 / 2일차 50)	15초

*패럴림픽 종목 아님

6.1.4 산탄총 종목은 국제사격연맹(ISSF)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6.2 사격 자세

6.2.1 스포츠등급 SG-S

6.2.1.1 스포츠등급 SG-S 선수는 휠체어 또는 스톨에 앉은 상태로 사격해야 한다.

6.2.1.2 휠체어에 앉아 사격하는 경우, 선수는 척추를 휠체어의 등받이에 밀착시킨 상태로 앉아야 한다. 등받이에 스트랩으로 고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엉덩이는 동작 전반에 걸쳐 휠체어 좌석과 완전히 접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2.1.3 발은 휠체어의 발판 위에 두거나, 하지는 무릎이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다리 지지대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또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표시된 각도로 지지되어야 한다. 발은 바닥에 놓여서는 안 되며, 이는 표준 휠체어 구성으로 형성되는 선수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6.2.1.4 선수가 스톨을 사용하는 경우, 해부학적 제한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은 수직면에서 체중을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기록되어야 한다. 선수의 엉덩이는 동작 전반에 걸쳐 스톨 좌석과 완전히 접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2.1.5 스포츠등급 SG-S 선수는 경기 중 대회 주리 또는 지정된 공식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며, 사격 전 과정에서 선수가 착석 상태를 유지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경우 척추가 휠체어 등받이에 접촉한 상태를 유지하며, 발이 위에서 규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6.2.1.6 스포츠등급 SG-S 선수는 사격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체에 스트랩을 사용할 수 있다. 스트랩의 폭은 10c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탄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수의 판단에 따라 체중 일부를 스트랩으로 지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6.2.2 스포츠등급 SG-L

6.2.2.1 스포츠등급 SG-L 선수는 입사 자세로 사격해야 한다.

6.2.2.2 입사 자세를 보조하기 위한 스톨, 가젯 또는 어떠한 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6.2.3 스포츠등급 SG-U

6.2.3.1 스포츠등급 SG-U 선수는 입사 자세로 사격해야 한다.

6.2.3.2 입사 자세를 보조하기 위한 스톨, 가젯 또는 어떠한 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6.3 장전 장치(안전)

6.3.1 스포츠등급 SG-U에 출전하는 선수는 사선마다 LOC가 설치한 적응형 장전 스탠드를 사용해야 한다.

6.3.2 선수 평가 과정에서 등급분류 패널은 개인이 산탄총을 안전하게 장전 및/또는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탄총을 잡고/또는 발사할 수 없거나, 발사 시 반동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 패널은 승인된 의수/의족 및/또는 적응형 장전 스탠드의 사용이 안전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 대회 주리가 선수가 산탄총을 안전하게 장전 및/또는 발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선수는 산탄총 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

6.3.3 의심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등급분류 패널이 규칙 6.3.2에 따른 조사 목적상 진단 관련 정보를 대회 주리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에 따라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6.4 기타

- 6.4.1 규칙 6.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적응형 장치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적응형 장치는 장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경우 해당 장치는 선수의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에 영구 승인 사항으로 기록된다.
- 6.4.2 산탄총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방아쇠 개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 6.4.3 산탄총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사격 테이블 및 지지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7 시각장애(VI) 규정

7.1 경기 종목 및 시간

7.1.1 모든 시각장애(VI) 종목 및 시간은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른다.

7.1.2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자체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목을 취소할 수 있다.

7.1.3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는 다음의 시각장애(VI) 종목(이하 “VI 종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종목	세부종목	성별	스포츠 등급	격발 수	전자표적 시간	표적 운반 및 감적호 조작 경기 시간
*VIS	VIS 공기소총 입사 시각 SH-VI	혼성	SH-VI	60	1:15	1:30
*VIP	VIP 공기소총 복사 시각 SH-VI	혼성	SH-VI	60	0:50	1:00

*패럴림픽 종목 아님

7.1.3.1 시각장애(VI) 종목에서는 다른 선수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매 세 번째 사로는 비워 두는 것이 권장된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기술대표가 한다.

7.1.3.2 사용하지 않는 장비 또는 추가 의자는 경기장에 남겨둘 수 없다. 선수는 장비를 올려두기 위해 의자를 사용할 수 없다.

7.1.4 결선

7.1.4.1 세계장애인사격연맹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결선에서는 종목 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ISSF 규칙을 따른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웹사이트에 게시된 「결선 지침」 문서를 참조한다.

7.1.4.2 VIS 및 VIP 종목에서 선수는 “LOAD” 명령이 내려진 후 10초 이내에 장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7.1.4.3 시각보조원(VI Assistant)은 결선이 진행되는 동안 지정된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7.2 복장 및 장비

7.2.1 사격 재킷

7.2.1.1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 3.2.10이 적용된다.

7.2.1.2 시각장애(VI) 소총 선수는 다음의 경우 ISSF 규칙에 따라 승인된 ISSF 재킷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	방식	규정
복사	사격의자에서 사격	허용됨: 재킷의 상단 세(3) 개 단추만 잠글 수 있으며, 단추는 늑골 하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치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추가 단추는 사용할 수 없다.
입사	자유 입사	허용됨: ISSF 규칙에 따른 재킷 사용

7.2.2 사격 재킷

7.2.2.1 모든 복사 선수는 사격 바지를 착용할 수 없다.

7.2.3 사격 신발

7.2.3.1 사격 신발은 ISSF 규칙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 3.2.3을 따라야 한다.

7.2.4 장비

7.2.4.1 표적에 대한 추가 조명은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조명은 ISSF 규칙을 따라야 한다.

7.2.4.2 경기위원회 위원은 IR LED 시스템을 시험해야 한다. 장치에 고장이 있거나 파손된 경우, 오작동이 허용된다.

7.2.4.3 선수는 대회를 위해 자체 LED를 지참해야 한다.

7.2.4.4 본선 및 결선 동안 모든 선수는 눈을 완전히 가려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도록 하는 눈가림을 착용해야 하며, 이는 불투명 고글, 완전히 밀폐된 안경, 안전 안경, 또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승인한 마스크일 수 있다.

7.2.4.5 선수의 음향 장치는 헤드폰 외부로 소리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1미터 거리에서 들리는 가청 소음은 금지된다.

7.2.5 장비검사

7.2.5.1 팀 리더 및 코치는 선수의 장비 및 복장이 본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7.2.5.2 ISSF 장비는 ISSF 규칙에 따라 검사된다.

a) 시각장애(VI) 사격 종목별 장비검사는 본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b) 선수는 매 대회 시작 전에 시각장애(VI) 사격 전용 장비 및 복장을 공식 검사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의 일부로 다음이 포함된다:

I. 선수는 현재 유효한 신분증(ID 카드)과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를 모두 제시해야 한다.

II. '장비검사표(Equipment Control Sheet)'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작성 및 서명해야 한다.

7.2.5.3 각 선수의 시각장애(VI) 사격 전용 장비는 각 종목 시작 전에 사대에서 경기위원회에 의해 검사될 수 있다.

7.2.5.4 무작위 장비검사는 경기 중 장비검사 담당 대회 주리에 의해 실시된다.

7.2.6 허용되지 않는 기능고장

7.2.6.1 조준 시스템의 기능고장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즉시 사대 운영요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7.2.6.2 경기 중 사대 운영요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a) 연결 해제된 전선;
- b) 저전력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

7.2.6.3 조준 시스템의 오작동과 관련된 기타 모든 상황은 ISSF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7.2.7 복사 자세를 위한 사격의자 및 테이블

7.2.7.1 사격 자세에서 등받이 사용은 금지된다.

7.2.7.2 복사 자세에서는 팔걸이나 측면판(사이드보드)이 있는 사격의자를 사용할 수 없다.

7.2.7.3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 3.8.1.3부터 3.8.1.6까지가 적용된다.

7.3 사격 자세

7.3.1 복사

7.3.3.1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규칙 4.2.2.5가 적용된다.

7.3.2 입사

7.3.2.1 선수는 ISSF 규칙에 부합하는 자유 입사로 사격해야 한다.

7.3.2.2 볼(뺨) 사용은 ISSF 규칙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

7.3.2.3 소총의 총신은 선수의 어깨와 같은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7.3.2.4 볼이 반드시 뺨받이에 닿아 있을 필요는 없다.

7.4 시각선수보조

7.4.1 모든 시각장애(VI) 선수는 경기 중 시각선수보조(VI Assistant)와 동행해야 한다.

7.4.2 시각선수보조(VI Assistant)는:

- 7.4.2.1 사선 호출(Firing Line) 최소 10분 전에 표적에 LED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 7.4.2.2 경기 중 선수와 시각선수보조 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금지된다. 다만 시각선수보조는 점수 확인 및 표적 방향 안내를 위해 비언어적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 7.4.2.3 시각선수보조는 선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준 장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소총을 지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준 중에는 단 한 명만 소총에 접촉할 수 있다.
- 7.4.2.4 시각선수보조는 VIP 및 VIS 종목 경기 전체 동안 지정된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사격 사이에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 선수 뒤에 위치하는 시각선수보조의 위치는 규정에 따라 고정되며 변경할 수 없다. 시각선수보조는 선수로부터 최소 50cm 뒤에 서 있어야 하며, 선수의 점수를 알리는 신호 제공 외의 다른 행위는 할 수 없다.

7.4.3 시각선수보조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7.4.3.1 조준 장치를 포함한 장비 설치를 선수에게 보조한다.
- 7.4.3.2 선수가 자신의 표적을 향하고 있지 않을 경우 즉시 이를 선수에게 알린다.
- 7.4.3.3 시각선수보조는 WSPS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 한해 장전을 수행할 수 있다.

8 단체전 규칙

8.1 소총/권총 단체전 경기 형식

- 8.1.1 본 단체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 포함된다.
- 8.1.2 단체 점수는 단체에 속한 선수들의 개인 종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즉, 별도의 단체 매치는 진행되지 않는다).
- 8.1.3 단체전에는 '정식 참가자(Full)'로 참가신청된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참가신청 상태가 MOS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8.1.4 단체 구성:
 - 8.1.4.1 모든 단체는 3명의 선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 8.1.5 NPC별 단체 참가 가능 최대 수:
 - 8.1.5.1 세계장애인사격연맹 공인대회 및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챔피언십: NPC당 종목별 1단체만 참가 가능하다.
 - 8.1.5.2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 NPC당 종목별 최대 2단체까지 참가할 수 있다.
- 8.1.6 종목 성립 요건:
 - 8.1.6.1 해당 종목의 스타트 리스트에 최소 3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최종 참가신청 마감 기준).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전은 자동 취소된다.
 - 8.1.6.2 해당 종목에 3단체만 참가하는 경우, '마이너스 원(minus-one)' 규칙에 따라 메달이 수여된다(예: 금메달과 은메달만 수여).

8.2 혼성팀 - 소총/권총

- 8.2.1 NPC당 종목별 최대 2개 팀까지 참가할 수 있다.
- 8.2.2 혼성팀 종목은 WSPS 웹사이트에 게시된 결선 지침(Commands and Announcements for Finals)에 명시된 결선 경기 형식을 포함하여, 현행 ISSF 경기 형식을 따른다.

8.3 파라 트랩 2인 단체전

- 8.3.1 NPC당 최대 2개 팀까지 참가할 수 있다.
- 8.3.2 각 단체는 남자 선수 1명과 여자 선수 1명으로 구성된다. 선수는 장애인 트랩 종목(PT1, PT2 또는 PT3) 중 하나로 참가신청될 수 있다.
- 8.3.3 단체 점수는 단체에 속한 선수들의 개인 종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즉, 별도의 단체 매치는 진행되지 않는다).

9 의료 규정

9.1 선수 안전

- 9.1.1 최우선 원칙은 항상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경기의 결과는 이러한 판단에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9.1.2 부상 선수의 경기 지속 또는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팀 운영진에게 있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선수 또는 기타 참가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거나 경기 참가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다.

9.2 간질

- 9.2.1 모든 선수와 해당 NPC는 선수가 과거에 어떠한 형태의 간질 발작(fit/seizure) 또는 간질 관련 증상을 겪은 적이 있는 경우, 이를 세계장애인사격연맹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9.2.2 모든 선수는 '선수 간질 신고서(Athlete Epilepsy Declaration Form)'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웹사이트에 게시됨)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선수에게 해당 시즌 경기 참가를 위한 세계장애인사격연맹 라이선스가 부여되기 전에 선수의 SDMS 프로필에 업로드되어야 한다.
- 9.2.3 '선수 간질 신고서'는 선수가 간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간질이 안정적인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선수가 겪는 간질의 유형을 명시한다.
- 9.2.4 선수가 의학적으로 간질 진단을 받았고, 직전 12개월 이내에 간질 발작을 경험한 경우, 해당 선수의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 참가 여부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2.5 선수가 언제든지 간질 발작 또는 간질 관련 증상을 경험한 경우, 업데이트된 '선수 간질 신고서'를 즉시 세계장애인사격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9.3 심박조율기(페이스메이커)

- 9.3.1 선수가 세계장애인사격연맹 인정대회에서 심박조율기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3.2 심박조율기를 사용하는 선수는 해당 장치의 병리적 배경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을 명시한 의료 자료를 세계장애인사격연맹(info@worldshootingparasport.org)에 제출해야만 한다.
- 9.3.3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은 해당 장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이다. 선수는 승인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세계장애인사격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 9.3.4 심박조율기 사용 사실을 세계장애인사격연맹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자동 실격 처리되며, 심박조율기를 사용한 상태에서 획득한 모든 경기 결과는 무효 처리된다.